## 6. 곡성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

## 인사위원회 규정

- 제1조(설치 근거) 곡성군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정관 제3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제2조(목적) 직원 및 지도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 의결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- 제3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무를 관장한다.
  - ① 직원 및 지도자의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
  - ② 직원 및 지도자위 승진·해임에 관한 사항
  - ③ 직원 및 지도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- ④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- ⑤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
  - ⑥ 기타 인사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.
  -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, 곡성군 체육담당 과장은 당연 직 위원이 된다.
  - ④ 위원은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    - 1.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    - 2.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
    - 3. 공무원(국가공무원을 포함 한다)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
    - 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
    - 5.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공기업의 지역 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
 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  - 1. "정당법"에 따른 정당의 당원
  - 2. 지방의회 의원
  -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본회 선임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
- 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  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  - ③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 · 의결 할 수 있다.
- 제9조(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적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·의결의 대상자인 경우
  - 2.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·의결의 대상자인 경우
  - 3. 위원 본인이 심의·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
  - ② 심의·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  - 1. 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
  - 2. 그 밖에 심의 ·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 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피하려 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심의) ①위원회는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

다.

- ②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케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.
-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대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 를 제출한 경우
- 제12조(인사위원회 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  - ① 개최일시
  - ② 출석위원의 서명
  - ③ 심의안건과 내용
  - ④ 의사
  - ⑤ 기타 중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